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207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소28864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차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중고차 딜러 C은 피고가 보관하는 중고차량인 현대자동차 EQ900 5.0 GD AWD 프레스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경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37,494,000원(= 차량 가액 34,500,000원, 이전비용 2,694,000원, 수수료 300,000원)에 구입하되 원고가 보유하던 에쿠스 중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10,700,000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26,700,000원(계약금 6,700,000원, 잔금 20,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26,700,000원 이외 추가 비용은 없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계약을 해약하고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0. 피고의 계좌로 위 계약금 6,7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C은 2019. 9. 10.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매입가격이 6,000,000원~6,500,000원임을 알리면서 이 사건 차량 매수대금 37,494,000원에서 원고 차량 매입가격 6,000,000원~6,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이 31,494,000원(±500,000원)으로 변동됨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6,7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7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비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5,000,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3)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면 이 사건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광고한 점, 원고가 C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6,700,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34,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 차량을 10,7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차량을 대금 34,500,000원(계약금 6,7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중 원고 차량의 매매와 관련한 내용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피고가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차량의 가액 산정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대금의 증액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의 매매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매입 가격이 당초보다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5,000,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34,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권오상